

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

- 본 조례안은 교육·복지 차원에서 취지와 목적은 훌륭하나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재정 부담에 대한 검토 및 집행부와의 논의가 필요함. 또한 입학축하금은 일회성 지원금으로 교육복지 증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나 학부모의 재정 부담 효과는 제한적이며 이러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단독 추진 시 지역 간 형평성 문제 및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함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